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6. 1.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 2009년 2월 16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9년 5월 26일
- 라. 상정일자 :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9년 5월 27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 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가. 개 정 이 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07.12.21)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08.7.9)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이 각 구 단위 간판시범사업 등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구청장 등에게 특정구역을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정구역 지정 시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 우리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지정함.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 제10조제34조, 별표 3)
 -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 제34조 관련 별표3(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에서 전주가로등주 항목을 삭제함.

○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안 제1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 표출비율은 같아야 하며,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자치단체 광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부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함.
-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0%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

○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안 제30조)

-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폐업사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영업소 안에 등록번호, 광고물 등의 설치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 또는 비치하도록 규정함.
-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으로는 ①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 ②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③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함.

○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3조)

-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4센티미터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안 제35조, 별표6)

-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업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신설함.

○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안 제37조)**

-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진흥의 도모 및 광고물 등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간판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07.12.21)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08.7.9)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6조에는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 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으며,
- 안 제10조·제34조·별표3에는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하였고
- 안 제17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 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을 20%로 하향 조정하여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 안 제30조에는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폐업사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영업소 안에 등록번호, 광고물 등의 설치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 안 제33조에는 광고물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

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5조·별표6에는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 안 제37조에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기타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에서 2008.12.22을 광고물 실명제 시행일로 하도록 법 제16조에서 조례에 위임되고 법 제20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2008.12.22을 기준으로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및 과태료 금액 상향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는 등 이 제도가 정착되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며, 2009.1.22 ~ 2.11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관련기관이나 단체,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00 호
----------	---------

제출연월일 : 2009.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07.12.21)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08.7.9)으로 영등포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 1)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이 각 구 단위 간판시범사업 등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구청장 등에게 특정구역을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영 제12조, 제32조)
- 2) 특정구역 지정 시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 우리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로 지정함.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 제10조·제34조, 별표 3)

- 1)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영 제11조, 제26조)
- 2)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 제34조 관련 별표3(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에서 전주·가로등주 항목을 삭제함.

다.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안 제17조)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 표출비율은 같아야 하며,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자치단체 광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부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함(영 제31조)
- 2)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30%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

라.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안 제30조)

- 1)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폐업사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영업소 안에 등록번호, 광고물 등의 설치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 또는 비치하도록 규정함(법 제11조)
- 2)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으로는 ①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 ②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③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함.

마.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3조)

- 1)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시행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법 제16조)
- 2)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센티미터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안 제35조, 별표 5)

- 1)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법 제20조, 영 제46조)
- 2)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업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신설함

사.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안 제37조)

- 1)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진흥의 도모 및 광고물 등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법 제5조의2)
- 2)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 지원에 따른 간관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9.1.22~2.11)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철감으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

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8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등포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③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점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 제4항·제5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 제3항·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현수막게시시설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 상호· 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맨홀·공동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지상변압기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석축·옹벽·담장(웁스,가설울타리 등)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9. 그 밖에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구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 중 채도 10이상인 적색(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

다) 또는 흑색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에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에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에드

벌론에 대하여는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휴지통 및 벤치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 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개별업소의 출입구는 제외)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 제3호·제4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해당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라 공연간판은 벽면 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께 있어서 내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계시대 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지정계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 제3호에 따라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와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 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제외)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해당 건물폭(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이내,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7.2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게시순서는 신청의 순으로 하며, 게시신청 현수막이 게시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용, 종교·문화·예술·체육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용, 기타 순으로 게시순서를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라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이내, 높이 2.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벽보판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의 벽보를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벽보의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또는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산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2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제10항에 따라 영등포구광고물관리심의소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담당 과장급으로 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 제2호부터 제3호제4호제5호를 준용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부터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영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에서 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가로형 및 세로형 간판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6. 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7.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및 교통시설이용광고물

9.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 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 전에 도면·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안전도검사)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3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5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⑥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구청장은 제14조 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구의 게시관 또는 구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 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 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 신고서

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2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 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제33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업소명,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 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써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8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

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 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4,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5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 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 31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업자 (대표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 	◦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 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제30조제1항 관련)

지 역	시설기준	
	옥외광고제작업	옥외광고대행업
영등포구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별표 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4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 수 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향 외의 간판)	개	·6제곱미터 이하	4,000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20제곱미터 이하	40,000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3,000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20,000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 아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5,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 가향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10제곱미터 이하	40,000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10제곱미터 이하	20,000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7. 에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20,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13,000 1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 대 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5,000
12. 아취광고물	개		5,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5,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6,000 1,500 10,000 2,000
15. 벽 보	매	· 50매당	5,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5,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 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수료
1. 차량탑세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 홍보탑광고		개		20,000
4.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 제1항 관련)
 - 광고물 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2)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 4]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광고물 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p>21,000</p> <p>38,000</p> <p>1,300</p>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p>14,000</p> <p>20,000</p> <p>1,600</p>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p>14,000</p> <p>20,000</p> <p>800</p>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 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p>14,000</p> <p>20,000</p> <p>800</p>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p>11,000</p> <p>600</p>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 소 당	15,000	법 제17조 제3항	
변 경	업 소 당	7,500	법 제17조 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 제3항)

- (1) 관할 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 (2) 업소 명을 변경한 때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부과기준	과 태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 관·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 ~ 0.8제곱미터 이하 - 0.9 ~ 1.0제곱미터 미만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13만원 22만원 32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 미터 미만 - 1.0 ~ 1.3제곱미터 이하 - 1.4 ~ 1.6제곱미터 이하 - 1.7 ~ 2.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42만원 50만원 64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 미터 미만 - 2.0 ~ 2.3제곱미터 이하 - 2.4 ~ 2.6제곱미터 이하 - 2.7 ~ 3.0제곱미터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30만원 +15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 ~ 0.8제곱미터 이하 - 0.9 ~ 1.0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 미터 미만 - 1.0 ~ 1.3제곱미터 이하 - 1.4 ~ 1.6제곱미터 이하 - 1.7 ~ 2.0제곱미터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만원 33만원 49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 미터 미만 - 2.0 ~ 2.3제곱미터 이하 - 2.4 ~ 2.6제곱미터 이하 - 2.7 ~ 3.0제곱미터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58만원 67만원 79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 3 제곱미터 초과면적의0.5 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0만원 +8만원

위 반 사 항	부과기준	과태료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8만원
- 1.0제곱미터 이하		12만원
- 1.1 ~ 2.0제곱미터 이하		14만원
- 2.1 ~ 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22만원
- 3.0 ~ 3.7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3.8 ~ 4.4제곱미터 이하		32만원
- 4.5 ~ 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42만원
- 5.0 ~ 6.0제곱미터 이하		58만원
- 6.1 ~ 8.0제곱미터 이하		75만원
- 8.1 ~ 10.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 15만원
(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8만원
- 1.0제곱미터 이하		12만원
- 1.1 ~ 2.0제곱미터 이하		14만원
- 2.1 ~ 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22만원
- 3.0 ~ 3.7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3.8 ~ 4.4제곱미터 이하		32만원
- 4.5 ~ 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42만원
- 5.0 ~ 6.0제곱미터 이하		58만원
- 6.1 ~ 8.0제곱미터 이하		75만원
- 8.1 ~ 10.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 15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8만원
- 1.0제곱미터 이하		12만원
- 1.1 ~ 2.0제곱미터 이하		14만원
- 2.1 ~ 3.0제곱미터 미만		

위 반 사 항	부과기준	과태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 ~ 3.7제곱미터 이하 - 3.8 ~ 4.4제곱미터 이하 - 4.5 ~ 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 ~ 6.0제곱미터 이하 - 6.1 ~ 8.0제곱미터 이하 - 8.1 ~ 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20만원 25만원 30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 15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 ~ 10장이하 - 11 ~ 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 ~ 10장이하 - 11 ~ 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 ~ 10장이하 - 11 ~ 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 ~ 10장이하 - 11 ~ 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위 반 사 항	부과기준	과태료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 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만원
나. 30일이상 90일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67만원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17만원
라. 180일이상 1년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17만원
마. 1년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0만원
나. 연 2회 위반자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5만원
나. 연 2회 위반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5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0만원
나. 연 2회 위반자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5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500만원 범위에서 해당 과

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7]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부과기준	부과금액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2.1~3.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3.1~4.0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4.1~5.0제곱미터 미만		45만원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55만원
- 6.1~7.0제곱미터 이하		65만원
- 7.1~8.0제곱미터 이하		75만원
- 8.1~9.0제곱미터 이하		85만원
- 9.1~10.0제곱미터 미만	95만원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110만원
- 12.1~14.0제곱미터 이하		130만원
- 14.1~16.0제곱미터 이하		145만원
- 16.1~18.0제곱미터 이하		165만원
- 18.1~20.0제곱미터 미만	185만원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0만원에 20 제곱미터 초과면적의1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2.1~3.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3.1~4.0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4.1~5.0제곱미터 미만		49만원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55만원
- 6.1~7.0제곱미터 이하		65만원
- 7.1~8.0제곱미터 이하		75만원
- 8.1~9.0제곱미터 이하		85만원
- 9.1~10.0제곱미터 미만	95만원	

위 반 사 항	부과기준	부과금액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 제곱미터 초과면적의1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10 제곱미터 초과면적의1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위 반 사 항	부과기준	부과금액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 ~ 3.0제곱미터 이하 - 3.1 ~ 4.0제곱미터 이하 - 4.1 ~ 5.0제곱미터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 ~ 6.0제곱미터 이하 - 6.1 ~ 7.0제곱미터 이하 - 7.1 ~ 8.0제곱미터 이하 - 8.1 ~ 9.0제곱미터 이하 - 9.1 ~ 10.0제곱미터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 ~ 12.0제곱미터 이하 - 12.1 ~ 14.0제곱미터 이하 - 14.1 ~ 16.0제곱미터 이하 - 16.1 ~ 18.0제곱미터 이하 - 18.1 ~ 20.0제곱미터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 ~ 25.0제곱미터 이하 - 21.1 ~ 30.0제곱미터 이하 - 30.1 ~ 35.0제곱미터 이하 - 35.1 ~ 40.0제곱미터 이하 - 40.1 ~ 45.0제곱미터 이하 - 45.1 ~ 50.0제곱미터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300만원에 50 제곱미터 초과면적의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 ~ 1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50만원

위 반 사 항	부과기준	부과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p style="text-align: right;">60만원 70만원 70만원+ 1㎡당5만원</p>
<p>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이상 	<p>·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p>	<p style="text-align: right;">40만원 60만원 80만원+ 1개당 5만원</p>
<p>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p> <p>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p>·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p>	<p style="text-align: right;">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당5만원</p>
<p>나. 교통안내소</p> <p>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p> <p>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편 의시설물</p>	<p>·가로형간판에 준함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p>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p>	<p>·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p>	

[별지 제1호서식]

신고필증 검인 인(제2조제3항 관련)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제3조제1항 관련)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 변 경 사 항	※ 비 고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외광고업신고번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m²)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 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별지 제7호서식]

- 규 격 : 가로 6cm × 세로 8cm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영등포구

〈후 면〉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20 ~ 2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영등포구청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물 실명표기 스티커형 인식마크 (제33조 관련)



【신규】



【연장】



【제연장】

- 부착 위치 : 광고물의 우측하단에 통일성 있게 부착
- 부착 주체 : 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
- 표시규격 : 가로 4cm × 세로 4cm
- 표시내용
 - ‘200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 제작업자 표시내용
 - 제작업소 명, 제작자 명, 전화번호

(주) 영등포 기획

홍길동 : 2670-4192

-- 10cm × 4cm --

[별지 제10호서식]

광고물 등 청구 및 인수증(제28조제4항 관련)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p>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영등포구청장 귀하</p>			
광고물 등 인수증			
인 수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 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p>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수인 (서명 또는 인)</p> <p>영등포구청장 귀하</p>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제31조제4항 관련)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 강 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영 등 포 구 청 장 인</p>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 대장(제31조제4항 관련)

① 연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호	비 고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제32조제2항 관련)			
수 탁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업장 소재지			
⑥위 탁 기 간		20 ~ 20 (년 월)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영등포구청장 인</p>			

[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제30조제4항 관련)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가·신고번호	광고주				광고물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m²)